

시티오씨엘 3단지 불법행위재공급(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859-100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 발표일(21.03.31)로부터 3년 (현재 전매제한기간 도과)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3.13.(금)	2026.03.18.(수)	2026.03.24.(화)	2026.03.28.(토)	2026.03.31.(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 본 주택은 **2024년 12월 준공(사용승인)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공된 발코니 확장공사를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시티오씨엘3단지 홈페이지(http://www.cityociel3.com) 등으로 상품과 입지 여건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9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ityociel3.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13.(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08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11.(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106**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3.18.(수)	2026.03.24.(화)	2026.03.28.(토)	2026.03.31.(화)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장소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50%)와 계약자(50%)가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공급계약서 체결 전까지 각각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구매한 정부 수입인지를 사업주체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구매한 정부 수입인지를 공급계약서와 함께 배부합니다.

-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발급 가능하며, 수입인지 구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1577-5500)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액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면제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사업주체가 인지세를 수납하거나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일부개정예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8331호(2026.03.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내 업무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6층 6개동 총 977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1세대[특별공급 1세대(다자녀가구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입주지정기간[2026.04.30.까지 잔금 납부 시 입주가능]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2026930008	01	084.7206A	84A	84.7206	32.8577	117.5783	61.5630	179.1413	32.0431	1	1	1
	합계									1	1	1

- ※ 평형환산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각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세대수	동	호	분양가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	301	2502	242,276,040	356,823,960	599,100,000	59,910,000	539,19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세대수	동	호	품목	계약금(10%)	잔금(90%)
				발코니 확장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	301	2502	14,400,000	1,440,000	12,960,000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거부 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불가)

■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동일한 공급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2024년 12월 준공(임시사용승인)된 아파트로서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 약정일이 경과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잔금대출 알선은 없습니다.**
-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1
합 계	1	1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구분</th> <th style="width:50%;">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요건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다자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4-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p> <p>■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p> <p>-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p>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3.24.(화) ~ 2026.04.02.(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3.2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일 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관 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 할수 있도록 사업주체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부적격 통보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 대리인 발급 불가) ※ 대리인 접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3.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검색대상</p>	<p>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주택의 범위</p>	<p>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주택처분 기준일</p>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p>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7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3.31.(화) / 10:00~15:00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5-069223	신한자산신탁(주)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5-104180	신한자산신탁(주)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와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는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견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견본주택 비치
	○		인지세 납부증명서		■ 「인지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급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함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청약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불가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6.04.01.(수) 15:00~16: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6.04.01.(수)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8

단지 여건 등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키즈라운지), 경로당(시니어라운지), 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클럽, GX룸, 다목적체육관), 작은도서관, 스테디룸, 주민카페, 맘스테인션 등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의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개시 전 날짜를 지정·통보 예정

■ 본 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3.1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주)디씨알이와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신한자산신탁(주)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는 (주)디씨알이 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은 위탁자 (주)디씨알이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계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디씨알이가 부담한다.
- 본 사업관련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신한자산신탁(주)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주)디씨알이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시공상의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주)포스코이앤씨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신한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 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신한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위탁자 (주)디씨알이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h3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div style="text-align: center;"> <h4>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4> <p>1. 공동주택명 : 용인 혁신1분동 도시개발사업 주거복합 건축공사(업무1) 2. 신 청 자 : ㈜디씨에이 3.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홍익로 587-10(영인 도시개발구역 내 업무복합시설용지)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나. 구조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3월 4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부동산원장</p> </div>	<h3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인증서</h3> <div style="text-align: center;"> <h4>녹색건축 예비인증서</h4> <p>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용인 혁신1분동 도시개발사업 주거복합 건축공사(업무1) 건축주 : (주)디씨에이 준공(예정)일 : 2024.11.30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홍익로 587-10(영인 도시개발구역 내 업무복합시설용지) 층 수 : 지상46층, 지하4층 연 면 적 : 178,328.647㎡ 건축면적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p> <p>인증 개요 인증번호 : 2021-078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03.04.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령일 중 앞선날</p> <p style="text-align: center;">인증 등급</p> <p>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도교본부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등급 ★ ★ ★ ☆</p> </div>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03월 04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부동산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부동산원</p> <p>※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h3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p style="text-align: center;">■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 6호 시행) 개정 2017.1.26</p> <h4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4>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개요</th> <th colspan="2">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td> <td>용인혁신1분동 도시개발사업 주거복합건축공사(업무1)</td> <td>인증번호</td> <td>21-3-04-11-00088</td> </tr> <tr> <td>준공연도</td> <td>2024.11.30</td> <td>평가자</td> <td>김진우</td> </tr> <tr> <td>주소</td> <td>인천광역시 서구 홍익로 587-10(영인 도시개발구역 내 업무복합시설용지)</td> <td>인증기관</td> <td>한국부동산원</td> </tr> <tr> <td>층 수</td> <td>지상4층 / 지하4층</td> <td>인증기준</td> <td>한국에너지공단</td> </tr> <tr> <td>연면적</td> <td>248,020.0310(㎡)</td> <td>유효기간</td> <td>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종료일</td> </tr> <tr> <td>건축물의 주된 용도</td> <td>공동주택</td> <td>인증등급</td> <td>인증등급</td> </tr> <tr> <td>설계자</td> <td>(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td> <td>인증등급</td> <td>인증등급</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h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h4> <table border="1"> <thead>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요구량</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td> <td></td> <td>75.7</td> <td>1+</td> <td>48</td> <td>50%</td> </tr> <tr> <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제</td> <td></td> <td>75.7</td> <td>1+</td> <td>48</td> <td>50%</td> </tr> <tr> <td>에너지 고소비량 건축실제</td> <td></td> <td>100.1</td> <td>1+</td> <td>72</td> <td>50%</td> </tr> </tbody> </table> </div>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th> <th rowspan="2">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r>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r> </thead> <tbody> <tr> <td>별첨</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33.4</td> <td>44.0</td> <td>33.9</td> </tr> <tr> <td>급탕</td> <td>38.7</td> <td>37.4</td> <td>28.3</td> </tr> <tr> <td>조명</td> <td>11.6</td> <td>10.6</td> <td>30.0</td> </tr> <tr> <td>총계</td> <td>2.9</td> <td>7.8</td> <td>1.3</td> </tr> <tr> <td>합계</td> <td>75.7</td> <td>95.2</td> <td>100.1</td> </tr> </tbody>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이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의 연료의 종류, 개량, 변환, 분배,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예상배출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 [설치량 [V] 설치하지 않음]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03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부동산원</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용인혁신1분동 도시개발사업 주거복합건축공사(업무1)	인증번호	21-3-04-11-00088	준공연도	2024.11.30	평가자	김진우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홍익로 587-10(영인 도시개발구역 내 업무복합시설용지)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층 수	지상4층 / 지하4층	인증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248,020.0310(㎡)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종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인증등급	설계자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75.7	1+	48	5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제		75.7	1+	48	50%	에너지 고소비량 건축실제		100.1	1+	72	50%	구분	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별첨	0.0	0.0	0.0	난방	33.4	44.0	33.9	급탕	38.7	37.4	28.3	조명	11.6	10.6	30.0	총계	2.9	7.8	1.3	합계	75.7	95.2	100.1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용인혁신1분동 도시개발사업 주거복합건축공사(업무1)	인증번호	21-3-04-11-00088																																																																																					
준공연도	2024.11.30	평가자	김진우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홍익로 587-10(영인 도시개발구역 내 업무복합시설용지)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층 수	지상4층 / 지하4층	인증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248,020.0310(㎡)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종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인증등급																																																																																					
설계자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75.7	1+	48	5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제		75.7	1+	48	50%																																																																																			
에너지 고소비량 건축실제		100.1	1+	72	50%																																																																																			
구분	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별첨	0.0	0.0	0.0																																																																																					
난방	33.4	44.0	33.9																																																																																					
급탕	38.7	37.4	28.3																																																																																					
조명	11.6	10.6	30.0																																																																																					
총계	2.9	7.8	1.3																																																																																					
합계	75.7	95.2	100.1																																																																																					

※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

※ 친환경주택의 성능 기준

-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고기밀창호	○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기자재	○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변압기,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 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세대 현관에 1개소 설치(다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부속동(근린생활시설,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_1층	2.7m	2.7m 이상
지하_2층	3.4m	2.9m 이상
지하_3층	2.3m	2.5m 이상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	소방/정보통신	전기
회 사 명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세종종합기술(주)
감리금액	8,741,412,240	1,782,000,000	2,133,064,145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10111-3543801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한강로3가)	110111-6740008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10111-0007909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174611-0002979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디씨알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 30, 450동 1층 상가 1-37호 (학익동, 시티오씨엘 4단지)	120111-0464149

☐ 홈페이지 : <http://www.cityociel3.com/>

☐ 계약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

☐ 분양문의 : 032-859-1005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